

보도시점 2024. 7. 8.(월) 16:00 배포 2024. 7. 8.(월) 10:00  
(회의 종료 시)

##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실장 : 방기선)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24년 상반기 주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보이스피싱('24.2.7)·불법사금융('24.2.20) 척결TF 보도자료 참고

- (일시/장소) 7.8.(월)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모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고, 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조직화 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오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 1.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 ① 먼저,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한다.

-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 출범)

-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특히,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병합수사를 실시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했고, 발 빠른 추적 수사로 3월부터 검거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기존 1,988건을 수사관 개별 수사 → 개선 41개 범죄조직으로 특정, 시도청 수사대로 병합 '24년 상반기 검거 : 1월 1,568건 → 2월 644건 → 3월 1,287건 → 4월 1,504건 → 5월 1,938건

-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 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와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는 수시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 < 주요 수사·검거사례 >

-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합수단)
- '19.11월~'24.4월 중국 산둥성, 산시성 등을 옮겨다니며 콜센터 설치, '대환대출', '기관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13명 검거, 9명 인터폴 적색수배(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 ②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24.11월).
-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 ③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붙임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④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 차단을 지원한다.

-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24.7월)하여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붙임 참조]**
-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확인된 발신번호)**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 또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25.)하여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토록 지원한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로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24.7월)한다.**[붙임 참조]**

#### 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한다

-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하여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기술 등 개발 중
-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 ⑥ 홍보를 강화하고, 피싱범죄 신고·대응에 대한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

- 유튜브에 피싱범죄수법, 피싱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송출하고, 피싱범죄 대응 방법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한다.**[붙임 참조]**
-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센터’**에 챗봇을 도입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개설('24.12월)로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⑦ 아울러,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 2. 불법사금융 대응방안

### < 불법사금융 단속 및 세무조사 성과 >

- 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32%), 검거인원(+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검거건수) ('23.上)666건 → ('24.上)879건, (검거인원) ('23.上)979명 → ('24.上)1,439명

#### < 주요 검거사례(경찰청) >

- ▶ 국내 최대규모의 대부카페를 운영(회원 13만명)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부중개한 조직 및 매입한 정보를 재유통하거나 미등록 대부 영업한 조직 검거  
→ 해당 대부카페는 폐쇄조치(방심위)하고, 범죄수익금인 현금 등을 압수하여 추가 범행 차단

- ②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1차: '23.11월~, 2차: '24.2월~) **총 1,467억원을 추정\***하였다.

\* 대부업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 세액 추정·징수하였으며, 가족·직원·연결계좌 등은 은닉 재산을 전방위로 추적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징한 결과

### < 불법사금융 척결 대응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①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

-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하여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경찰청 등)
-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 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등)

②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하였다.(검찰청)
-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現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

③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 최근 온라인매체의 과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유관기관과 민간사업자 협력과제)

\* (예) ①법령위반이 명백한 광고 금지 및 발견 즉시 삭제, ②광고주 정보 확인 강화 등

※ 영국은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시행, 플랫폼사업자의 불법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불법정보 식별, 관리 등 → 게시 방지 또는 신속 제거)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지자체, 금감원 등)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요금금지서(이동통신사 고객)에 불법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과기정통부, 금융위)
-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금융위 등)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100만원 대출(23.3월~)

④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금감원, 법률구조공단)

\*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 중

-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여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불법채권추심 대응 및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향후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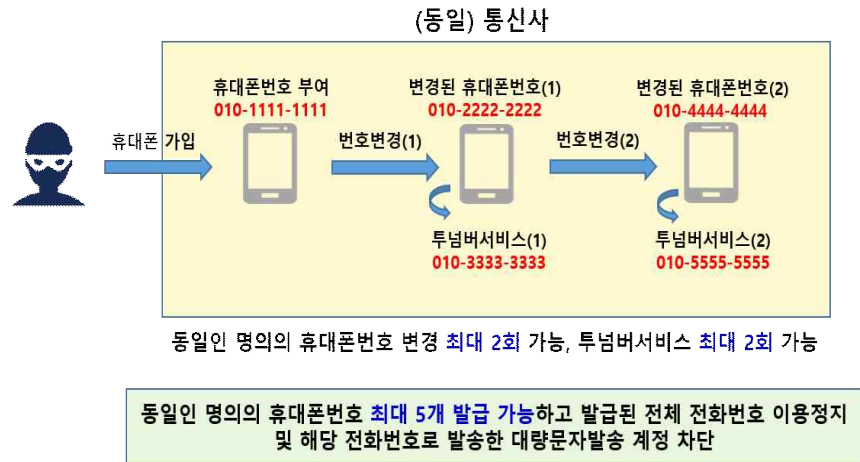
-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중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오정우 (044-200-2082) |
|               | 일반행정정책관실   | 담당자 | 경 감   | 강주이 (044-200-2094) |
| 공동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성보경 (044-200-2190) |
|               | 재정금융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이경민 (044-200-2192)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심주섭 (044-202-6650) |
|               | 통신이용제도와    | 담당자 | 사무관   | 김미애 (044-202-6651) |
|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남현 (02-2110-1520) |
|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애 (02-2110-1522) |
|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우석 (02-2110-1560) |
|               | 디지털유헬정보대응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상현 (02-2110-1567)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진호 (02-2100-2970) |
|               | 금융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명호 (02-2100-2974) |
|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전수한 (02-2100-2510) |
|               | 가계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진호 (02-2100-2523) |
|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이법진 (044-204-3601) |
|               | 조사2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수 (044-204-3617) |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만 (02-3480-2280) |
|               | 마약조직범죄부    | 담당자 | 계 장   | 김수정 (02-3480-2284) |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윤원일 (02-3480-2853) |
|               | 형사3과       | 담당자 | 검 사   | 오승환 (02-3480-2906) |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안찬수 (02-3150-0141) |
|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백의형 (02-3150-2782) |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강태영 (02-3150-2037) |
|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유지훈 (02-3150-2763)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책임자 | 팀장(代) | 태현수 (02-2100-3071) |
|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담당자 | 사무관   | 임수연 (02-2100-3078) |
|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홍석린 (02-3145-8270) |
|               |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담당자 | 팀 장   | 정윤미 (02-3145-8285) |
|               |            |     | 수석조사역 | 이교석 (02-3145-8142)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임정환 (02-3145-8150) |
|               | 금융사기대응단    | 담당자 | 팀 장   | 정재승 (02-3145-8130)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책임자 | 단 장   | 이동연 (02-405-6640)  |
|               | 이용자보호단     | 담당자 | 팀 장   | 박해룡 (02-405-5245)  |

## 붙임1 보이스피싱 대책 설명자료

### 1 범죄 이용 전화번호 등 일괄 차단

- ▶(현황) 보이스피싱·스미싱, 발신번호 변작, 불법 스팸 등 위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전화회선 및 문자 계정 차단 → 이와 연결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변경, 다른 인터넷 문자 발송 계정을 활용하여 범죄 지속
- ▶(개선)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번호 하나만 적발되더라도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 변작된 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숨겨진 전화번호 추적하여 차단  
\* 착신전환 번호, 가상번호, 동일인이 생성한 여러 개의 인터넷 문자 발송 계정 등



⇒ **현재** 확인된 전화번호 1개+문자발송 확인된 계정 1개, 총 2개 차단  
→ **개선** 전화번호 5개+동일인 평균 문자계정 2~3개, 약 8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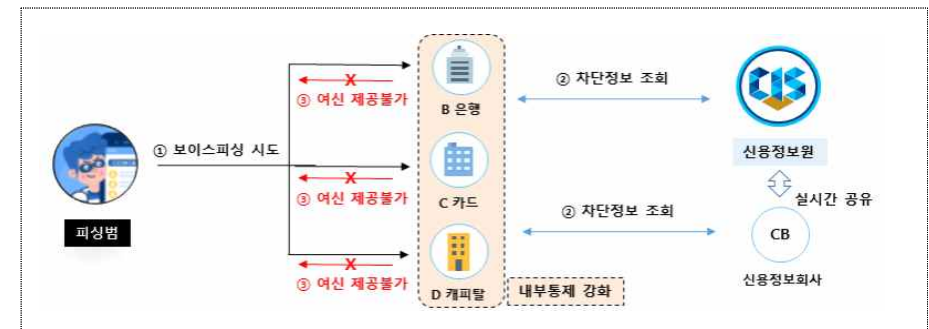
### 2 해외 발신 문자 안내 표시 강화(로밍발신)

- ▶(현황) 최근 휴대전화 해외 로밍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 등장, 국제 발송 문자는 [국제문자] 표시가 되는 반면 국내 통신사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경계심이 약해질 우려
- ▶(개선)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도 [로밍발신] 안내문구가 표시되도록 시스템 개선



### 3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 ▶(현황)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규 신용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 발생
- ▶(개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신규 여신거래를 소비자의 신청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거래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차단신청



#### 4 보이스피싱 단계별 종합 안내서

- ▶ (현황) URL에 의한 악성앱 설치로 '휴대폰 먹통'일 경우 대처가 복잡하고, 피싱 피해 발생 시 구체적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민 혼란
  - ▶ (개선) 주요 수법과 단계별 대응법, 사전 예방 서비스, 사후 피해구제신청 방법을 안내
- ⇒ 경찰서은행에 비치하고 온라인 게시 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포처 확대 계획

##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요 피싱범죄 유형 및 수법 안내

#### 이런 전화 무조건 피싱사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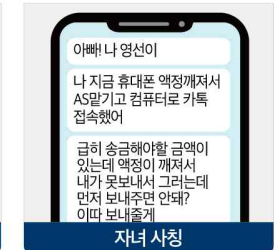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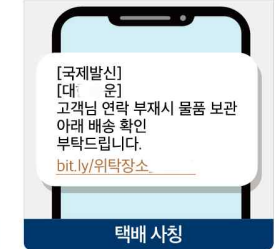


00은행인데요, 저금리로 대출대출을 해드립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감찰청 000검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입증해 해야 합니다.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 이런 문자 무조건 피싱사기입니다!



#### 이런 수법 무조건 피싱사기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라면서 조사 · 대출상담  
명목으로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구속영장 등을 확인해보라면서 사이트 주소나  
파일을 이메일 · 메신저로 보내는 경우

비공개 특급사건이라면서 주변에 말하지 말고,  
녹취를 위해 독립공간(모텔 등)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급속처리해야 대출금을 입금해 줄 수  
있으며 특정 장소로 배송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디에 전화하더라도 범죄조직에만 연결되므로 초기화 전까지 전원OFF 또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악성앱이란?

이런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수 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른 경우

모바일 대출신청서, 은행 앱을 가장한 파일을 받은 경우

수사 검열 목적을 가장한 파일을 받은 경우

주요 기능



전화 수발신 번호 통제

연락처, 통화-메시지 내용 탈취

위치 확인, 도청

## 1. 112에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24시간)

- 피해금을 계좌로 보낸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 신청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일 내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한 은행에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 접수)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개인·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란?

**개 요** 개인·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은행 콜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인증서가 있는 경우 → PC 또는 휴대전화로 신청 가능

PC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중 선택
- 2중(인증서+휴대전화) 본인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 선택

휴대전화 신청

- 금융앱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설치
- 2중(인증서+휴대전화) 본인확인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중 선택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 선택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은행 콜센터에 전화 신청  
※ 거래 은행 한 곳에만 신청해도 타 은행 본인명의 계좌까지 한 번에 일괄 지급정지 가능

## 이렇게 대응하세요!

....

## 2.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세요 (홈페이지 앱 24시간 / 고객센터 평일 09:00~18:00)

고객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4로 전화하여 차단 요청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앱: 메뉴에서 '요금조회 / 소액결제 / 휴대전화결제'를 선택 → 한도 변경에서 '차단'을 선택하여 변경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차단 선택

## 3. 휴대전화 신규가입 등 차단하세요 (홈페이지 평일 주말 공통 09:00~22:00)

**개 요** 명의도용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 · 번호이동 · 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 PC 신청: 엠세이퍼(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입제한 서비스' 클릭
  - 통신사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 지점·직영점에 방문하여 신청
  - 휴대전화 신청: PASS 앱\* 설치 → 우측 하단 '전체'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클릭  
\* PASS 앱을 통한 서비스는 '24년 7월 초 재오픈 예정'

## 4.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24시간 / 고객센터 평일 09:00~18:00)

홈페이지: 엠세이퍼(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클릭

방문신고: 내 명의로 모르는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  
※ 명의도용 신고는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지점 방문 필요

| 처리 단계       | 처리 절차                                                                      |           |                  |                   |           |
|-------------|----------------------------------------------------------------------------|-----------|------------------|-------------------|-----------|
| ① 명의도용 인지   | - 통신사 지점·직영점 방문: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가입정보 확인<br>- 인터넷 확인: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이용 |           |                  |                   |           |
|             | 구분                                                                         | SKT       | KT               | LGU+              | 알뜰폰(39개사) |
|             | 가입고객                                                                       | 114       |                  |                   |           |
| ② 명의도용 접수   | 비가입고객                                                                      | 1599-0011 | 100<br>1588-1618 | 1544-0010<br>(유료) |           |
|             |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명의도용 조사(사실확인서) 작성 및 접수                                         |           |                  |                   |           |
| ③ 통신사 사실조사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개통 관련 사실조사                                                |           |                  |                   |           |
| ④ 심사 및 고객통보 | 회사 귀책인 경우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의뢰                                       |           |                  |                   |           |

112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로 연결, 전문 상담사를 통해 통신·금융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사 합동 대응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기타 후속조치 및 피싱 예방 서비스

### 신분증 재발급 (※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 필요)

#### 주민등록증

- 정부24 홈페이지(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이전 주민등록증 지참



정부24

####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방문



도로교통공단

### 공동·금융인증서 재발급

- 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재발급/폐기



개인정보포털

### 개인정보 도용, 유출여부 확인

-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
- '탈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idc.eprivacy.go.kr)에서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강화



탈린내정보찾기

### 피싱 예방서비스

####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24년 7월 중 오픈 예정)

- 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본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신규로 실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신청
-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자연이체 서비스

- 고객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 취소 가능(※ 창구거래 미적용)

####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 (1일 1백만 원 이내에서 한도 설정)만 허용하는 서비스(※ 창구거래 미적용)

#### 해외 IP 차단 서비스

-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 차단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내 번호를 도용해서 피싱 등 불법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차단하는 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

이행기준

통신사 신청

## 피해지원 사업소개

### 1. 기업공익 사업 : '보이스피싱 제로'

#### 지원 대상

-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 및 일반 시민

#### 지원 내용

- 생활비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300만원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단, 피해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민사 소송 (소송 실비, 변호사 비용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비 (심리 치료 및 검사, 진료비 및 약제비 등 1인 최대 200만원)

#### 선정 기준

- 생활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자
- 법률 상담 지원**
  - 기본 상담** -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자
  - 소 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 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심리상담 지원**
  -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자
  - 전문가 자문위원 심사를 통한 선정



사무국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사무국 메일 / 팩스를 통한 사업 신청 서류 제출

- 생활비 지원, 법률 상담 지원 : 개인 신청 및 기관 신청
- 심리 상담 지원 : 기관을 통한 신청
-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 : 기관 및 단체 신청(수시 접수)

#### 문의처

#####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

- 연락처 : 1811-0041
- 팩스 : 02-6733-1067
- 이메일 : shinhhan-voice@gnk.or.kr
- 상담 시간 : 월~목 10:00~17:00  
금 10:00~12:00

### 2.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안내

- 개 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 대 상**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
- 신청방법** 피해가 발생한 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 및 배상신청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0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 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 3. 증거 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채무 당사자는 물론,  
관계인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금감원(☎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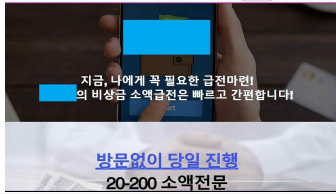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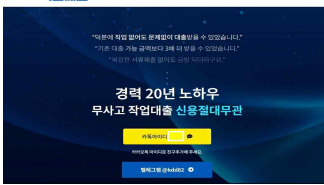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등에 유포(우려)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

## 1. 온라인 플랫폼 불법대부 광고 주요 유형

| 구 분             | 주요내용                                                                                                                                                                                                          |
|-----------------|---------------------------------------------------------------------------------------------------------------------------------------------------------------------------------------------------------------|
| ① 미등록대부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조건 등 대부(중개)업 광고 게시</li> <li>- 「대부업법」 제3조, 제9조의2, 제19조 제1항</li> </ul>                                                                          |
| ② 작업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를 위변조 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광고 게시</li> <li>- 대부조건 이외에 '작업대출'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li> <li>- 「대부업법」 제3조, 제9조의2, 제19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31조</li> </ul>                 |
| ③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요금서비스를 이용한 물품판매 등을 가장 또는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할인하여 매입하면서 자금유통알선하는 내용을 게시</li> <li>- 결제금액 비율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li> <li>-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li> </ul>  |
| ④ 신용카드 현금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물품판매 등을 가장 또는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할인하여 매입하면서 자금유통알선하는 내용을 게시</li> <li>- 결제금액 비율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현금화'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li> <li>-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li> </ul> |

## 2. 유형별 사례

|                                                                                                            |                                                                                                       |
|------------------------------------------------------------------------------------------------------------|-------------------------------------------------------------------------------------------------------|
| <p>① 미등록 대부업</p>         | <p>② 작업대출</p>       |
| <p>③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p>  | <p>④ 신용카드 현금화</p>  |